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1200068**
신청인: 김수경
피신청인 : 전주현(Jeon joo heon)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김수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건영아파트 110동 1101호

대리인 : 법무법인 남앤드남 (변호사 최승욱)

피신청인: 전주현(Jeon joo heon)

경상남도 마산시 상남동

분쟁 도메인이름들은 "party-su.com, partysu.net"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가비아(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룡포스트타워 2차 11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2.5.1.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 (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2.5.2.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2.5.2.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2.5.4.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2.5.8.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2012.5.8.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2.5.28. 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2.5.28.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미제출통지를 2012.5.29. 피신청인에게 하였다.

2012.5.30. 센터는 장문철 조정위원회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2.5.31.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2012.5.31.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7. 1 <partysu.co.kr>을 등록한 이래(갑 제4호증의 4) 의류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해오다가 2011. 6. 28 “주식회사 파티수” 를 설립하였다 .(갑 제7호증) 또한 신청인은 2007. 1경부터 “파티수” 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으며 해당 명칭에 대해 2011. 10. 12 로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하였다. (갑 제3호증)

한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party-su.com>을 2011. 11. 1 에(갑 제2호증의 1) 그리고 <partysu.net>을 2011. 12. 2 등록하였다.(갑 제2호증의 2)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분쟁도메인이름들은 등록대행기관 "가비아 인크 [주 가비아]"명의로 등록되어(갑 제2호증) 있어서 피신청인을 "가비아 인크"로 지정하였으나 신청서 제출당시에 해당 도메인이름들로 연결되는 웹사이트에는 운영자가 "전주현(Jeon jooheon)"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갑 제1호증) 분쟁도메인이름들의 "실질적 등록권자"는 전주현으로 추정된다.

(2) 분쟁도메인이름 <party-su.com>와 <partysu.net>은 신청인의 등록 상표 및 서비스표인 "파티수"(갑 제3호증)의 영문표기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서비스표 "파티수"가 특허청에 등록된 직후에 등록되었다.

(3) 피신청인 "가비아 인크 [주 가비아]"은 대표적인 도메인 등록대행기관으로서 분쟁도메인이름 <party-su.com>와 <partysu.net>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으며, 본 도메인이름들을 실질적으로 사용 및 운영하고 있는 "전주현(Jeon jooheon)" 역시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에 아무런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전주현"은 도메인이름 등록 이

전에 신청인과 거래하던 자로서, 신청인은 "전주현"에게 "파티수"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할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4) 분쟁도메인이름 <party-su.com>과 <partysu.net>은 신청인과 동일 업종인 신발 및 의류판매를 하는 인터넷 의류쇼핑몰에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분쟁도메인이름들의 웹사이트는 신청인의 도메인이름 <partysu.co.kr>의 웹사이트를 그대로 모방(카피)한 것이다.(갑 제4호증). 분쟁도메인이름들을 이용한 웹사이트가 동일한 업종(의류관련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신청인의 웹사이트를 그대로 모방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또는 실질적 등록권자인 "전주현"은 경쟁자인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 도메인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5) 피신청인 또는 "전주현"은 본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서비스표 및 웹사이트와 오인 또는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로 유인하고 있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분쟁도메인이름 <party-su.com> 과 <partysu.net>는 신청인의 상표의 표지인 “파티수”가 아니라 “파티수”의 영문 표기인 “Party Su”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도메인이름들과 신청인의 상표의 표지가 음성학적으로 유사성은 없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일반대중들이 두 단어들의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이해한다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Société pour l’Oeuvre et la Mémoire d’Antoine de Saint Exupéry - Succession Saint Exupéry - D’Agay v. Perlegos Properties*, WIPO Case No. D2005-1085; *Compagnie Generale Des Etablissements Michelin - Michelin & Cie. v. GraemeFoster*, WIPO Case No. D2004-0279)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 <party-su.com> 와 <partysu.net>가 신청인의 상표의 영문 표기인 “PARTY SU”와 동일하며 분쟁도메인이름의 영문 표기와 신청인의 상표의 한글 명칭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규정 제4조 (a)(ii)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반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으나 일단 신청인이 이에 대해 소위 “반증되지 않는 한 충분한 증거” (prima facie evidence)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전환된다.

신청인은 2007. 1경부터 “파티수” 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해당 표지에 대해 2011. 10. 12 에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하였으며 (갑 제3호증) 피신청인에게 해당 상표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거나 승인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한다. 분쟁도메인이름들의 웹사이트는 신청인의 허락 없이 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에 게재된 저작물을 모방하여 (갑 제4호증의 1 및 2)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한 후 신청인의 상품을 판매하여 왔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주장이나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본 패널도 별도의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규정 제4조 (a)(iii)에 따르면 신청인은 해당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제 4조 (b)에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취지에 해당하는 기타 사정도 포함된다.

본 패널은 이 사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론한다.

(1) 피신청인 또는 "전주현"은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하고 사용한 점 그리고 피신청인의 웹사이트가 신청인의 쇼핑몰 웹사이트를 모방하여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또는 전주현은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자신에 웹사이트로 유인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분쟁도메인이름들을 이용한 웹사이트가 동일한 업종(의류관련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신청인의 웹사이트를 그대로 모방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나 실질적 등록권자인 "전주현"은 경쟁자인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 도메인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3) 실질적 등록권자인 "전주현"가 신청인과 과거에 신청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해온 거래관계가 있었고 거래관계가 단절된 후에 신청인의 상표와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한 "전주현"의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가 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을 전체적으로 모방한 점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된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i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

록하고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들 <party-su.com> 과 <partysu.net> 를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장문철
1인 조정부인

결정일: 2012년 6월 15일